

특별공급 공동안내

■ 특별공급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년 1월 18일(월) [인터넷 신청 청약 Home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자 ※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 필수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이상 계속 부양한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도 포함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 청약 신청(특공 + 특공)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합니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포함